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15억5천6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최종)예산 15억4천9백만원 대비 0.5%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548,321	1,555,785	7,464	0.5
사 업 비	1,411,263	1,415,399	4,136	0.3
행정운영경비	137,058	140,386	3,328	2.4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합 계	1,548,321	1,548,321	1,555,785	7,464	0.5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411,263	1,411,263	1,415,399	4,136	0.3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1,411,263	1,411,263	1,415,399	4,136	0.3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63,600	63,600	61,805	△1,795	△2.8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278,367	1,278,367	1,165,323	△113,044	△8.8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296	69,296	188,271	118,975	171.7
행정운영경비	137,058	137,058	140,386	3,328	2.4
기본경비	137,058	137,058	140,386	3,328	2.4
기본경비	137,058	137,058	140,386	3,328	2.4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A)	2020(B)	증감(B△A)	증감률(%)
합 계	1,548,321	1,555,785	7,464	0.5
사업예산 소계	1,411,263	1,415,399	4,136	0.3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63,600	61,805	△1,795	△2.8
사무관리비	39,600	37,805	△1,795	△4.5
국외업무여비	15,000	15,00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0	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278,367	1,165,323	△113,044	△8.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59	7,250	391	5.7
사무관리비	474,193	445,093	△29,100	△6.1
공공운영비	77,480	77,980	500	0.6
국내여비	378,000	342,000	△36,000	△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0	21,000	0	0.0
특정업무경비	276,000	252,000	△24,000	△8.7
재료비	15,000	15,000	0	0.0
배상금등	2,160	1,000	△1,160	△53.7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675	4,000	△23,675	△85.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296	188,271	118,975	171.7
사무관리비		3,800	3,800	(신규)
공공운영비	36,186	107,831	71,645	198.0
전산개발비		9,208	9,208	(신규)
자산및물품취득비	33,110	67,432	34,322	103.7
행정운영경비	137,058	140,386	3,328	2.4
기본경비	137,058	140,386	3,328	2.4
사무관리비	113,498	116,426	2,928	2.6
국내여비	8,820	9,100	280	3.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	5,500	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240	9,360	120	1.3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예산안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6천2백만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11억6천6백만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1억8천8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4억 1천 6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천만원 등으로 전년(15억4천8백만원) 대비 0.5% 증액한 15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직무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년도(6천3백만원) 대비 2.8% 감액한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3,600	63,600	61,805	△1,795	△2
사무관리비	39,600	39,600	37,805	△1,795	△4
국외업무여비	15,000	15,000	15,000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9,000	0	0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강사료 = 6,140천원	○ 강사료 = 7,695천원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 4,650천원	- 강사료(기본직무교육) = 4,77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일반1급) 350,000원*7명 = 2,450천원 ▷ 강사료 (일반2급) 220,000원*10명 = 2,200천원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 1,490천원 ▷ 강사료 350,000원*3회 = 1,050천원 ▷ 강사료 220,000원*2회 = 440천원 ○ 원고료 11,000원*10시간*6매 = 660천원 ○ 교재인쇄비 = 7,686천원 - 교재인쇄비 (직무교육 등) 25,000원*122명*2권 = 6,100천원 - 교재인쇄비 (핵심 교육 등) 13,000원*122명 = 1,586천원 ○ 교육운영비 = 1,264천원 - 기본직무교육 764,000원 = 764천원 - 분야별 핵심교육 250,000원*2회 = 500천원 ○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증식비 3,500원*110명*10회 = 3,850천원 ○ 직무 공동연수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일반1급) 360,000원 * 7명 = 2,520천원 ▷ 강사료 (일반2급) 225,000원 * 10명 = 2,250천원 - 강사료(분야별핵심교육) = 2,925천원 ▷ 강사료 360,000원*5회 = 1,800천원 ▷ 강사료 225,000원*5회 = 1,125천원 ○ 원고료 12,000원*5시간*6매 = 360천원 ○ 교재인쇄비 = 8,250천원 - 교재인쇄비 (직무교육 등) 25,000원*135명*2권 = 6,750천원 - 교재인쇄비 (핵심 교육 등) 15,000원*100명 = 1,500천원 ○ 교육운영비 = 2,300천원 - 기본직무교육 800,000원 = 800천원 - 분야별 핵심교육 150,000원*10회 = 1,500천원 ○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증식비 4,000원*130명*5일 = 2,600천원 ○ 직무공동연수 15,000,000원 = 15,000천원 ○ 국외 통번역료 등 1,600,000원 = 1,600천원
	증감사유	
	정기인사에 따른 신규 인력배치로 수사업무 조기적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따른 강사료, 운영비 증액 및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통역 및 번역료 신설 추가, 최근 3년 결산 실적에 따른 원고료, 직무교육 증식비 감액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000*1식 = 15,000천원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000원 = 15,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900,000원*10회 = 9,000천원	○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900,000원*10회 = 9,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본직무교육, 분야별 핵심교육, 직무역량 강화 공동 연수 및 해외 선진 우수사례 학습 등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경찰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 내실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자치구의 파견인력의 짧은 재직기간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및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전보 제한 기간(2년, 전문관 3년) 미준수)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9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인력은 전년대비('18년 1. 43명→'19.10. 31명) 12명이 감소하였음.

<p>「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p> <p>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p> <p>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p>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 인력증감현황

(단위 : 명)

구 분	출범전 (‘15.11.)	출범후					증감	
		(‘16.2.)	(‘16.3.)	(‘17.9.)	(‘18.1.)	(‘19.10.현재)		
합계 (시+구 현원)	108	122	119	113	105	96	▲12	
시 인력	정원	45	53	57	56	63	65	+20
	현원	43	61	61	62	62	65	+22
자치구 인력	현원	65	61	58	51	43	31	▲34

※ 인력감소 사유 : 각 자치구별 인력수급 어려움 및 파견희망직원 부재 등에 따른 자치구 파견 인력감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직급별, 직렬별 재직기간 현황 〉

직급	직렬	재직기간					비고
		계	1년 미만	1~2년	2~3년	3년 이상	
*전체평균: 2년10개월 (전문관: 4년9개월)		65 (전문관 19)	17 (전문관 0)	13 (전문관 1)	10 (전문관 5)	25 (전문관 13)	
3급	행정	1	1				
4급	행정	2	1			1	
5급	행정	5 (전문관 1)	2	1		2 (전문관 1)	
	보건	4 (전문관 2)	1			3 (전문관 2)	
	약무	1	1				
	방사선	1				1	
	환경	1			1		
6급	행정	14 (전문관 3)	2	4	4 (전문관 2)	4 (전문관 1)	
	세무	1		1			

	전산	3 (전문관 1)	2		1 (전문관 1)		
	보건	9 (전문관 5)	2	2 (전문관 1)		5 (전문관 4)	
	약무	1 (전문관 1)				1 (전문관 1)	
	환경	4 (전문관 2)	1			3 (전문관 2)	
	지적	1		1			
7급	행정	6	2	2	1	1	
	사회복지	1	1				
	기계	2 (전문관 1)		1		1 (전문관 1)	
	보건	5 (전문관 3)			3 (전문관 2)	2 (전문관 1)	
	운전	1	1				
8급	운전	1		1			
임기제	행정	1				1	

○ (직렬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임기제	기타 (파견)	
		행정	세무	전산	사회 복지	기계	보건	방사 선	약무	환경	지적	운전			
총 계	정원	65	31	1	2	1	1	16	1	2	6	1	2	1	
	현원	65	28	1	3	1	2	18	1	2	5	1	2	1	31
	과부족	0	△3	0	+1	0	+1	+2	0	0	△1	0	0	0	

- 또한, 동 사업중 ‘국외업무여비’는 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예산(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2020년에도 같은 예산(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000*1식 = 15,000천원	○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000원 = 15,000천원
	증감사유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8,814	6,186
2018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9,707	5,292
2019년 (10.31.기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7,992	7,008

나.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현장 활동 여비, 행정장비 등의 구매 등을 위해 전년 대비 8.8%(12억7천8백만원) 감액한 11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278,367	1,278,367	1,165,323	△113,044	△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59	6,859	7,250	391	5
사무관리비	474,193	474,193	445,093	△29,100	△6
공공운영비	77,480	77,480	77,980	500	0
국내여비	378,000	378,000	342,000	△36,000	△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1,000	21,000	21,000	0	0
특정업무경비	276,000	276,000	252,000	△24,000	△8
재료비	15,000	15,000	15,000	0	0
배상금등	2,160	2,160	1,000	△1,160	△53
자산및물품 취득비	27,675	27,675	4,000	△23,675	△85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 10,000,000 = 10,000천원
	증감사유	
	최근3년 결산 실적에 따른 기획단속 등 매식비 감액, 홍보비, 차량임차료 감액 근무복 4종에 따른 피복비 증액 및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비용 신설	

- 동 사업 중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국’ 단위 조직임에도, 검찰과 경찰과 달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없으므로 사건관계인 인권 대책, 특별사법경찰 연간 수사방향 설정, 자치경찰과의 협업사업 발굴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위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의 정책자문단도 소관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음.
- 본 정책자문단은 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조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h3>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h3> <p>특사경 수사방향 설정, 시간관계인 인권 디책, 자치경찰과 협법방안 발굴 등 제도기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p> <h4>I 구성 목적</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특사경 범죄동향 등을 연간 수사계획에 반영하여 수사성과 제고 - 수사 관련 규정 제개정 필요성, 특사경 수사 확대분야 발굴 등 도모 ○ 시간관계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인권 보호 디책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인권친화적 수사 체계 구축 ○ 향후 도입될 자치경찰과의 협법방안 발굴 등 선제적인 제도개선 추진 <p>검경(檢警) 유사 제도 운영 사례(상세 : 별첨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 인권정책자문단(국내외 인권정책 일반) ● 대검찰청 : 검찰미래위원회(검찰개혁) ● 경찰청 : 인권위원회(인권정책 일반), 수사정책위원회(수사정책 자문 등) <h4>II 범 적 성 격 : 비상임 자문기구로 운영</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은 T/F(Task Force)팀 자문단으로 운영 기시 ○ '20년 자문단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며, 향후 필요시 위원회 설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월, 민관협력담당관) <p>▶위원회 설치 전 밀경기간(1년 정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지침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근거 조제 제정 전에 T/F(Task Force)팀 자문단 운영 - T/F팀 자문단의 순수기관을 방침에 명시하여 운영 후, 해당 기간 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h4>II 정책자문단 구성</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법사법경찰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구성인원 : 총 9명 내외 구성(수사, 인권, 특법사법경찰 분야별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회, 연구기관, 서울시 유관단체,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대표성 있는) 일반시민,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섭외 구성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Task Force)팀 자문단임을 감안, 임기는 1년으로 정함 - 자문단 구성 이후 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자문단 임기 등을 감안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후 신규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기존 자문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 분과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① 수사, ② 인권, ③ 특법사법경찰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민생수사)반장과 서기(담당사무관) 지정 <h4>IV 정책자문단 운영</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자문단이 참여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사업 및 현안 과제 논의 ○ 수시회의 : 필요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등 필요시 분과별 회의 개최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1억 7천 5백만원)하고 있음.
- 차량임차료는 21대의 차량 임차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차량 임차 대수는 19대 수준인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차량 임대차 계약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차량임차료 = 177,600천원	○ 차량임차료 = 175,800천원
사무관리비	- 1500CC미만 550,000원*5대*12월 = 33,000천원	- 1500CC미만 530,000원*5대*12월 = 31,800천원
	- 2000cc미만 650,000원*1대*12월	- 2000cc미만 600,000원*1대*12월

	= 7,800천원		= 7,200천원
- 승용대형 800,000원*9대*12월	= 86,400천원	- 승용대형 800,000원*9대*12월	= 86,400천원
- 승합차량 700,000원*6대*12월	= 50,400천원	- 승합차량 700,000원*6대*12월	= 50,400천원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 현황〉

보유차량 : 23대 (임차 121대, 자차 2대)

(19.10.31. 현재, 단위:대)

수사 팀별	계			정책팀		대부업	환경보전			상표권		부동산	사회복지		식품안전	보건약	방문판매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승용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승용	승용	화물	승용	승용	승용
계	18	3	2	2	1	2	2	1	1	1	1	2	2	1	3	2	2

수사차량 필요성

- 현장 단속·수사 활동, 피의자 호송, 압수물 수송, 야간단속, 미행 및 잠복활동 등에 필요
- 특히, 현장 증거자료 압수 등의 경우에는 수사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일시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많은 차량 필요

최근 3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 업체	차량 대수	계약금액 (예산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차량종류		
						승차인원	경유	취발유
2017	퍼시픽 렌터카(주)	19대	134,640 (157,680)	'17.1월 ~ '17.12월 (12개월)	일반공개경쟁	5인승 6 9인승 9 11인승 4	13	6
2018	삼보렌터카 (주)	19대	133,676 (157,680)	'18.1월 ~ '18.12월 (12개월)	일반공개경쟁	5인승 6 9인승 9 11인승 4	13	6
2019	퍼시픽 렌터카(주)	21대	145,464 (177,600)	'19.1월 ~ '19.12월 (12개월)	일반공개경쟁	5인승:8 9인승:10 11인승:3	13	8

- 또한, 수사장비 중 채증용 액션 바디캠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 수사장비 및 특사경 보안장비 도입 = 27,675천원	○ 수사장비 도입 = 4,000천원
	- 스파이형 캠코더 500,000원*2대 = 1,000천원	- 채증용 액션 바디캠 500,000원 *8팀*1대 = 4,000천원
	- 회의용 보안장비 2,585,000원*10대 = 25,850천원	
	- 금속탐지기 165,000원*5대 = 825천원	
	증감사유	
	채증에 필요한 액션 바디캠 구입	

- 채증용 액션 바디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촬영)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1)를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근접 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사, 영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편집 제한 또는 전체를 누락 없이 녹화·활용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²⁾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 바디캠(body camera)은 몸에 작는 카메라를 부착해 출동한 현장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이고, 폴리스캠(police camera)이라고도 부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최미경·최정민,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59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6.13. 참조

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본 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2017년),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수사전산장비 기능개선 및 추가도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4백만원)', '공공운영비(1억8백만원)', '전산개발비(9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6천7백만원)' 등 총 1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296	188,271	118,975	171.7%
사무관리비	.	3,800	3,800	(신설)
공공운영비	36,186	107,831	71,645	198.0%
전산개발비		9,208	9,208	(신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110	67,432	34,322	103.7%

〈 세부 산출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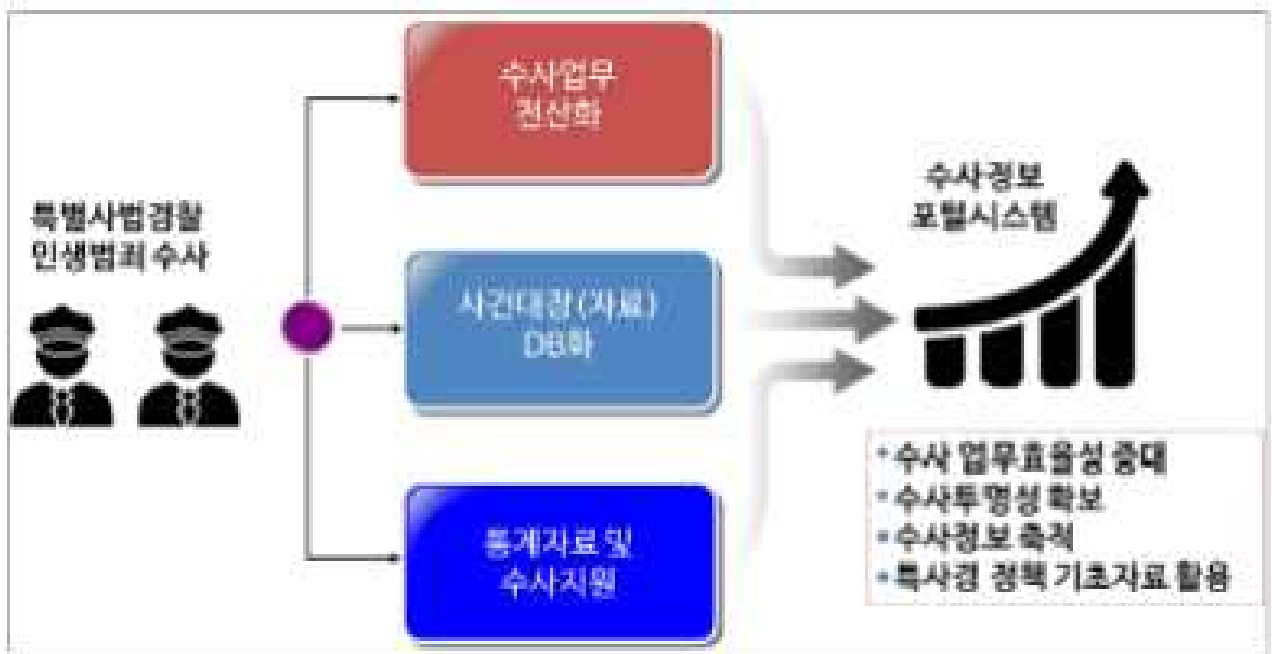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수사전산장비 수리비 300,000원*6회 = 1,800천원
		○ 압수물 봉인봉투 제작 4,000원*500개 = 2,000천원
	증감사유	
	○ 일부 수사전산장비중 수리비 장애발생시 실비지급	
	○ 디지털저장 매체 원본 압수시 사용되는 압수봉인지, 정전기방지 필름 봉투 등 제작	
공공운영비	○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26,584천원	○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27,251천원
	- 노트북 299,000원 = 299천원	- 분석서버 13,200,000원*1대*8%*(6/12개월) = 528천원
	- 외장하드 79,000원 = 79천원	- 노트북 1,870,000원*2대*8% = 3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디스크증거복제 7,218,750원*1대*8%*1년 = 578천원	- 외장하드 247,500원*4대*8% = 80천원
	- GPS 시계 56,000원 = 56천원	- 디스크증거복제 7,218,750원*1대*8% = 578천원
	- 서버용증거분석 소프트웨어 13,198,000원 = 13,198천원	- GPS 시계 1,407,406원*1대*8% = 113천원
	- 현장용 증거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12,374,000원 = 12,374천원	- NAS 1,910,051원*1대*8%*(6/12개월) = 77천원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 1,432천원	- 서버용 증거분석 S/W 87,999,440원*15%*1식 = 13,200천원
	- 디지털증거팩변환장비(DEP KIOSK) 1,432,000원 = 1,432천원	- 현장용 증거수집 및 분석 S/W 82,494,720원*15%*1식 = 12,375천원
	○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유지관리 = 3,320천원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 1,841천원
	- 이동형 영상녹화장비 585,000원 = 585천원	- 디지털증거팩변환장비(DEP KIOSK) 17,909,100원*1대*8% = 1,433천원
	- 진술녹화시스템 5,451,420원*3대*8% = 1,309천원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연계서버 5,089,821원*1대*8% = 408천원
	- (구)진술녹화시스템 5,644,430원*1대*8% = 452천원	○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유지관리 = 1,587천원
	- (구)진술녹화시스템 754,000원 = 754천원	- 진술녹화시스템 5,451,420원*3대*8%*(2/12)개월 = 219천원
	- DVR(영상저장장비) 1,122,000원*1대*8% = 90천원	- (신)진술녹화시스템 4,098,120원*7대*8%*(6/12)개월 = 1,148천원
	- 카메라 147,500원*11대*8% = 130천원	- DVR(영상저장장비) 1,122,000원*1대*8% = 90천원
	○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전용회선운영 = 4,850천원	- 카메라 147,500원*11대*8% = 130천원
	- KT전용회선, VPN, 라우터장비 사용료 404,110원*12월 = 4,850천원	○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단말기 전용회선운영 = 4,852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전용회선, VPN, 라우터장비 사용료 404,330원*12월 = 4,852천원 ○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 275,000,000원*15% = 41,250천원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207,000,000원*15% = 31,05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개발 완료된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과 수사정보포털 시스템, 진술녹화시스템(7대)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 ○ 일부 사용 빈도가 낮은 수사전산장비는 장애발생시 실비 지급으로 운영 변경 	
전산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개선 9,208,000원 = 9,208천원
	증감사유	
	○ 2018년 개발 완료된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의 기능확대 개발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4,730,000원*7대 = 33,1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추가 교체 = 19,536천원 - 진술녹화장비 4,730,000원*3대 = 14,190천원 - 원격지뷰어S/W 660,000 원*5식 = 3,300천원 - 폐쇄망 구축 2,046,000 = 2,046천원 ○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 47,896천원 - 디지털포렌식 교차분석용 S/W 7,150,000원*1식 = 7,150천원 - 데이터분석용 S/W 30,828,660원*1식 = 30,829천원 - 쓰기방지장치 1,100,000원*3대 = 3,300천원 - 모바일 증거채증 패키지 1,650,000원*2대 = 3,3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 현장용 노트북 1,658,500원*2대 = 3,317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 추가 교체(3대) 및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폐쇄망 구축 ◦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 동 사업 중 수사전산장비 수리비와 디지털저장 매체 원본 압수시 사용되는 압수봉인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92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은 각종 수사관련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의 표준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음.



서울특별시(2018),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완료 보고' 중 발췌

- 2018년 개발 완료되어 사용중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검토사항 처리부, 인허가 통보관리, 제보민원관리 등 신규기능 추가 개발을 위한 것임.
-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³⁾”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성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u> - <u>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u>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

○ 동 사업 중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와 수사정보포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하 ‘AI 수사관’이라 함)은 스마트 도시정책관(빅데이터담당관)이 시스템을 구축(2018.12)하여 2019년 7월에 민생 사법경찰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임.

※ ‘AI 수사관’은 빅데이터 기술로 SNS나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그림을 실시간 수집·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제5조의2 (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I·빅데이터 활용, 불법 정보수집 자동화로 수사효율성 제고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불법 과대광고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 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불법 다단계 AI 수사 시범적용, 성과입증】 : 회원수 56천명, 피해금액 약 212억 추정



- 다단계(1개) ⇨ **중 범위(9개)로 확대** (*정보수집종 : 대부, 부동산, 상표, 보건 등)
- 용의자 특정 ⇨ **피해자까지 특정**으로 업그레이드 (AI 수사효율성 극대화 추진)

- ‘AI 수사관’은 2019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개인정보 활용은 비식별 조치 완료하는 등 범위반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향후 ‘AI 수사관’ 시스템이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개인정보 비식별화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방법임.
- ※ 집행부는 'AI 수사관' 시스템은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게시글(컨텐츠)를 대상으로 수집되며, 이중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비식별화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적정성 평가 이후, 빠르면 2019년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년 5월 13일 결정(의안번호 제2019-09-130호)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 및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 동 사업 중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 추가 교체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폐쇄망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보안성검토 결과 통보(정보통신보안담당관.8314, 2019.4.11.)】

- 진술녹화장비는 폐쇄망으로 단독 구축
- 조서작성용 PC는 기존 업무망에 연결하고 폐쇄망과 구분하여 사용

-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에는 조사실(10실)과 범죄조회실(1실)이 있으며, 수사관과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7대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기능이 저하된 조사실진술녹화시스템(3대)을 동일한 진술녹화시스템으로 구매·교체하여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화상분석시스템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4) 교체 녹화

4)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102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장비(3대)는 2014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내용연수의 경과시점은 2023년 4월인바, 시기 적절한 예산 반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조사실 진술녹화시스템 현황 >

구분	장 비 명	모 델 명	수량	구 성
H/W	이 동 형 영 상 녹 화 장 비	NDIRS-NC21	1식	· 이동형수사녹화기기, 거치형카메라, 수사녹화프로그램, 이동형프린터 등(15. 7월 도입)
	(구)진술녹화 장비	DIRS-2014	3식	· 회전형 줌카메라, 고정형 돔카메라(52만 화소), 마이크, 녹화확인등, 수사녹화프로그램 포함 (14. 4월 도입) - 교체대상
	(구)진술녹화 장비	D I S - 1	1식	· 회전형 줌카메라, 고정형 돔카메라(41만 화소), 마이크, 녹화확인등, 수사녹화프로그램 포함 (13.10월 도입), '19년 7대 교체
	(신)진술녹화 장비	ADD-NO112	7식	· 회전형 줌카메라, 고정형 돔카메라(200만 화소), 마이크, 녹화확인등, 수사녹화프로그램 포함 (19.6월 도입)

○ 동 사업 중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은 디지털 증거의 교차분석으로 신뢰성⁵⁾ 확보, 압수 대상 원본매체에 대한 무결성⁶⁾ 확보,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데이터

5) 신뢰성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관한 요건은 해당 증거의 모든 아이템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필요로 함. 보관의 연속성이란 증거의 수입에서부터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의 법적인 용어로, 이러한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에 의존함.

6) 무결성 -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가 용이하고 외부환경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거 원본이 변경·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증거원본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무결성 입증은, 포렌식의 기본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 중의 하나임. 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철저적인 오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분석을 위한 것으로 최근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증가('17년.7~12. 총 14회, 79개 매체, '18년 64회, 237개 매체, '19년 9월 37회, 132개 매체)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요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청 남산별관 3층)
- ▶ 구 성 : 분석실과 참관실(약 33㎡) ※ 통제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 ▶ 운영인력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명
- ▶ 개 소 일 : 2017. 8. 22.(화)

※ 디지털포렌식 수사 - 수사관련 증거를 획득, 분석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PC, 핸드폰 등 모바일 정보를 수집·추출·분석하여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기법을 말함.

※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⁷⁾으로 e메일, 문서파일 같은 디지털 증거물을 객관적(과학적)방식으로 입증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이용한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동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017년 8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하였음.

○ 디지털포렌식 추가 장비 도입장비 현황

- ① 교차 분석용 소프트웨어 도입: 1식
- ②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도입: 1식
- ③ 휴대용 쓰기 방지 장치: 3대
- ④ 모바일 증거 채증 패키지: 1대

※ 교차분석용 소프트웨어 : Encase는 미국에서 개발된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W

7)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 IBM에서 개발한 용·복합데이터 분석 솔루션
- ※ 쓰기방지장치 :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USB 등 원본 데이터가 수정 및 삭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 ※ 모바일 증거 채증 시스템은 외장카메라, 휴대용 프린터, 채증 소프트웨어로 구성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4,730,000원*7대 = 33,1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추가 교체 = 19,536천원 - 진술녹화장비 4,730,000원*3대 = 14,190천원 - 원격지뷰어S/W 660,000 원*5식 = 3,300천원 - 폐쇄망 구축 2,046,000 = 2,046천원 ○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 47,896천원 - 디지털포렌식 교차분석용 S/W 7,150,000원*1식 = 7,150천원 - 데이터분석용 S/W 30,828,660원*1식 = 30,829천원 - 쓰기방지장치 1,100,000원*3대 = 3,300천원 - 모바일 증거채증 패키지 1,650,000원*2대 = 3,300천원 - 현장용 노트북 1,658,500원*2대 = 3,317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 추가 교체(3대) 및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폐쇄망 구축 ○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⁸⁾”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술성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 - <u>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함</u>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에 따라 작성 필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	--

-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구입으로 디지털 수사장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2017년 8월 개소 이후 계속 2명으로, 장비 추가로 인한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인력이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디지털 포렌식 장비 현황 >

구분	품명	제품명	수량	내용연수	구입시점	구입비
H/W	분석서버(워크스테이션)	HP Z640	1	6년	2017.06.26	13,200,000원
	노트북	HP 450G3	2	6년	2017.06.30	3,740,000원
	SSD외장하드	EZSAVE 락다운	4	5년	2017.06.30	990,000원
	증거복제장비	Media Imager GM4	1	6년	2017.06.26	7,218,750원
	GPS시계	아이네트 GF2000	1	8년	2017.06.26	1,407,406원
	NAS	Synology DS916	1	6년	2017.06.26	1,910,051원
S/W	서버용 모바일 분석	FINALMobileForensics	1	없음	2017.06.26	78,562,000원
	서버용 디스크 분석	FINALForensics	1	없음	2017.06.26	9,427,000원
	현장용 모바일 분석	FINALMobileLive	2	없음	2017.06.26	64,449,000원
	현장용 디스크 분석	FINALForensics Field	4	없음	2017.06.26	18,045,720원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제5조의2 (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실적, 평균 수사기간

- 수사실적 : 2017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총 133회 522개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 1회 평균 수사기간 : 디지털포렌식 소요기간
 -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은 약 3일정도 소요되며, 매체 자체를 봉인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약 7일 정도 소요

디지털포렌식 전담 수사관 현황 및 교육내역

직급 및 직렬	인원	민생사법경찰단		교육
		전 입 일	재직기간	
전산6급	1명	'17.1.16.	2년 10개월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전산6급	1명	'19.7.17	4개월	- 현장수사관 교육(자체)

2019년 디지털포렌식 운영실적 (1월~9월)

- 37회에 걸쳐, 132개 매체의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 내역은 붙임과 같음.

2017년~2018년 디지털포렌식 운영실적

2017년	2018년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17.7 ~ 12) - 총 14회 79개 매체	- 포렌식 지원 실적 : 64회 237매체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참조.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